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강화 대책

Q&A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체 밀착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는데요.
신체 밀착 제품은 무엇인가요?

- 신체밀착형 제품은 침대, 베개, 마스크, 팔찌, 생리대 등 신체에 착용하거나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신체 밀착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알기 쉽게 정리하여 법령에 담을 예정입니다.

신체 밀착형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이 금지되는데
그 외 제품에는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 신체 밀착 이외 제품의 경우에도 음이온 효과를 위해 고의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또한 산업적 이용 목적에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할 지라도 안전기준(1mSv/y)을 만족해야 합니다.

음이온 제품은 모두 제조와 홍보가 금지되는 건가요?

- 음이온 효과를 위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와 홍보를 금지하는 것 입니다.
- 전기적 현상을 이용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측정서비스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인 라텍스만 해당되나요?

-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라텍스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기타 제품과 폐업한 업체까지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1월 22일 발표한 강화대책은 생활방사선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그럼 이미 판매되어 유통 중인 제품들은 어떻게 되나요?

- 이미 판매·유통 중인 제품은 기존 안전기준(1mSv)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방사선 의심제품이 있을 경우,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에 신고·접수해 주세요.
-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전화 : 1811-8336 / 온라인 : www.kins.re.kr/radon

건축자재에 대한 대책은 왜 빠진건가요?

- 건축자재는 실내 공기질 차원에서 환경부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